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 12. 30.>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別紙第41号書式] <改正2021年12月30日>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食品営業届出事項変更届出書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裏面の提出書類と留意事項をよく読んで記入してください。

(表面)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발급일 発給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신고인 届出人	성명 氏名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生年月日 (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변경대상 変更対象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営業所の名称又は商号名			
	영업의종류 営業の種類	신고번호 届出番号		
변경사항 変更事項	변경 전 変更前		변경 후 変更後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営業者 (法人は代表者)				
영업소 명칭(상호) 営業所の名称 (商号)				
영업소 소재지 営業所の所在地				
영업장 면적 営業場の面積	건물 내부 장소 [m ²] 建物内部の場所 [m ²]	건물 내부 장소 [m ²] 建物内部の場所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建物外部の場所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建物外部の場所 [m ²]		
시설 등 施設等				

변경사유

変更事由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食品衛生法」第37条第4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43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通り届け出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고인

届出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区庁長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担当公務員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同意しない場合は、関連書類を申請人本人が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고인

届出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유의 사항
留意事項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1. 届出が必要な主な変更事項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イ. 営業者の氏名(法人の場合は、その代表者の氏名)、営業所の名称又は商号、営業所の所在地を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ロ. 営業場の面積を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ハ. 即席販売製造・加工業で、「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37条に基づく即席販売製造・加工対象食品のうち、食品の種類を変更して新しい食品を製造・加工しようとする場合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ニ. 食品運搬業で、冷蔵車・冷凍車を増減しようとする場合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ホ. 食品自動販売企業で、同じ市(済州特別自治道は行政市を指す)・郡・区において食品自動販売機の設置台数を増減しようとする場合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変更申告をしない場合は、「食品衛生法」第75条第1項第7号に基づき営業所閉鎖等の行政処分等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営業届出証を紛失した場合は、変更事由欄にその事由を書き、営業届出証は添付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営業届出事項変更届出書は、変更した日から7日以内に提出してください。

제출서류 提出書類	<p>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p> <p>1. 営業所の所在地変更の場合</p> <p>가. 영업신고증 1부</p> <p>イ. 営業届出証 1部</p> <p>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ロ. 製造・加工しようとする食品の類型及び製造方法の説明書1部(「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2号の営業のうち、製造・加工しようとする食品の類型及び製造方法が変更された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ハ. 施設使用契約書の写し1部(食品運搬業を営もうとする場合で、車庫又は洗車場を賃貸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二. 「飲用水管理法」による飲用水の水質検査機関が発行する水質検査(試験)成績書1部(水道水ではない地下水等を、飲用水又は食品等の製造過程や食品の調理・洗浄等に使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ホ. 遊船又は渡船事業免許証又は届出済証の写し1部(水上構造物からなる遊船場又は渡船場におい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同ロ. の一般飲食店営業及び同ハ. の製菓店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ヘ. 食品自動販売機の種類及び設置場所が記載された書類1部(2台以上の食品自動販売機を設置して一連管理番号を付与し、一括で届け出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ト. 水上レジャー事業登録証の写し1部(水上構造物からなる水上レジャー事業場におい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及び同ハ. の製菓店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チ. 「国有財産法施行規則」第16条第3項による国有財産使用収益許可書の写し1部(国有鉄道の停車場施設又は軍事施設におい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5号の食品小分け販売業の営業、同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の営業、同ロ. の一般飲食店の営業及び同ハ. の製菓店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リ. 当該都市鉄道事業者と締結した都市鉄道施設使用契約に関する書類の写し1部(都市鉄道の停車場施設におい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5号の食品小分け販売業の営業、同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の営業、同ロ. の一般飲食店の営業又は同ハ. の製菓店の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수수료 手数料</p> <p>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p> <p>所在地의變更: 26,500ウォン</p> <p>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p> <p>所在地以外の変更: 9,300ウォン (収入印紙又は収入証紙)</p>
--------------	--	---

	<p>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p>ヌ. 予備軍食堂運営契約に関する書類の写し1部(軍事施設におい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ロ. の一般飲食店の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カ.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ル. 営業所と連接する外部の場所を営業所として使用する場合は、当該外部の場所に対して正当な使用権限が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同号ロ. の一般飲食店営業又は同号ハ. の製菓店営業を営もうとする者が、当該外部の場所で飲食物等を提供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タ.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ヲ. 当該営業場で営業できることを証明する「食品衛生法施行規則」別表15の2による書類1部[飲食販売自動車(「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別表1第1号・第2号及び備考第1号イ. による移動型飲食販売用途である小型軽型貨物自動車、又は同表第2号による移動用飲食販売用途である特殊作業型特殊自動車)を使っ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の営業、又は同号ハ. の製菓店の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フ. 「児童遊戯施設安全管理法」第12条第1項及び同法施行令第7条第4項によるこどもの遊戯施設の設置検査合格証又は「児童遊戯施設安全管理法」第12条第2項及び同法施行令第8条第5項によるこどもの遊戯施設の定期施設検査合格証(「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ロ. ホ. 又はハ. の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で、当該営業場にこどもの遊戯施設を設置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ハ.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カ. シェアキッチン所在地、面積等が記載されたシェアキッチンの使用契約に関する書類(「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9号のシェアキッチン運営業者のシェアキッチンを使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p> <p>2. 製造・加工しようとする食品の種類及び製造方法の説明書1部(「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2号の営業のうち、製造・加工しようとする食品の種類及び製造方法が変更された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3.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3. 営業所と連接する外部の場所を営業所として使用する場合は、当該外部の場所に対して正当な使用権限が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同号ロ. の一般飲食店営業又は同号ハ. の製菓店営業を営もうとする者が、当該外部の場所で飲食物等を提供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4. 그 밖의 변경의 경우</p> <p>4. その他の変更の場合</p>	
--	---	--

	가. 영업신고증 1부 イ. 営業届出証 1部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ロ. 届出が必要な主な変更事項に対するその変更内容 1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土地利用計画確認書(「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42条第1項第10号による国有財産使用許可書を提出した場合を除きます。)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建築物台帳又は「建築法」第22条第3項第2号による建築物の臨時使用承認書(「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42条第1項第10号による国有財産使用許可書を提出した場合を除きます。)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液化石油ガスの安全管理及び事業法」に基づき韓国ガス安全公社社長が発行する液化石油ガスの使用施設完成検査証明書(「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の営業、同号ロ. の一般飲食店の営業及び同号ハ. の製菓店の営業を行おうとする者のうち、「液化石油ガスの安全管理及び事業法」第44条第2項に基づき液化石油ガス使用施設の完成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のみ該当します)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自動車登録証(届出をした飲食販売自動車の面積を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5. 「多数利用営業所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第9条第5項に基づき消防本部長又は消防署長が発給する安全施設等の完備証明書(営業所の所在地を変更するか営業場の面積を変更する場合で、「多数利用営業所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施行令」第2条第1号イ. による営業のみ該当します) 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事業者登録証(飲食販売自動車を使用し、「高等教育法」第2条に基づく学校で当該学校の経営者が「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又は同号ハ. の製菓店営業を営も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 	

